

수의학 교육인증 기구 설립추진



우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의학교육인증원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향후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 학계 관련 인사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하였으며 지난 5월 11일은 한국 수의학교육협의회(회장 : 김철중)와 수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 김기석)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의학교육의 질적향상과 배출된 수의사의 일정한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학교육인증원을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7일 인증기구의 설립을 위해 유한상교수, 김명철교수, 김기석교수, 박전홍교수, 이흥식명예교수, 정갑수부장, 강화순상무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1차 회의를 대한수의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추진경과 및 평가인증개요 보고가 있었으며 이흥식위원을 만장일치로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가칭 수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공식명칭은 국문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약칭 ‘인증원’)”으로 영문은 “Accreditation Board for Veterinary Education in Korea (약칭 ‘ABOVEK’)”으로 결정하였으며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정관제정(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2005년도 실시한 대교협의 “수의학분야 평가 편람 및 기준”을 참고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9월 중에는 발족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흥식 신임 위원장의 인증원 설립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수의학교육인증원은 왜 설립하나요?

수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졸업 후 교육의 효율성 증대,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 향상,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 대학의 자율성 신장, 사회적 요구에 부응,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서 경쟁력 강화, 대학의 특성화와 차별화,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는 수의과대학운영체계, 수의학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수업방법과 수업평가, 학생지도체계, 교수총족율 및 활동, 시설 및 설비, 산학연협동, 직원, 동창회 활동, 취업률 등을 평가하여 시대발전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의사의 양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AVMA 및 유럽의 EAEVE를 비롯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의 VSAAC, 카리브해 15개 국가가 운영하는 CAAM, 일본의 JUAA, 필리핀의 AACUP, 멕시코의 CONEVET, 영국의 RCVS등이 국내 평가인증기관이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 타 분야에도 이런 기구가 존재하나요?

우리나라에는 고등교육인 의학(KIMEE), 치의학(KIDEE), 간호학(KABON), 한의학(KOMEET), 공학(ABEEK), 경영학(KABEA), 건축학(KAAB), 무역학(KTEA) 등을 비롯한 많은 인증평가기관들이 각기 자기의 전문분야를 평가하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5. 학문분야 인증이 강제사항인가요?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고등교육법(법률 제9356호) 제11조의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8852호)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19호)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대학의 시설, 구조, 행정, 예산, 교수, 학생, 교과과정 등에 관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반드시 매년 12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법(법률 제9356호) 제11조의 2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63호)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한 공공의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